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9

# 부 산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24누2090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
| 피고, 피항소인 | ○○광역시 ○구청장 |
|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2335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4. 8. 16. |
| 판 결 선 고 | 2024. 9. 13.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7,772,570원 및 지방교육세 22,729,860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9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의 "이 사건 체비지"를 모두 "이 사건 체비지 등"으로 고친다.

> 가. 원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4. 4. 위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
>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447세대를 신축하여 2022. 7. 12.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중 일반분양분 322세대, 보류지 5세대 합계 327세대(이하 '이 사건 체비지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1)2)]

○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구 지특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지특법'이라 함)"을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의하여, 원고는 준공인가일인 2022. 7. 12. 이 사건 체비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9

전의 것, 이하 '2015년 지특법'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의 "2018년 지특법"을 모두 "2015년 지특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3, 5, 10행, 5쪽 7, 13, 16, 19행, 6쪽 4, 6, 9, 12, 20행, 7쪽 20행, 8쪽 1, 4행의 각 "체비지"를 모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마지막행의 "구 지특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을 "2015년 지특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2~3행의 "2014년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시점부터"를 "2015년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에도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예고한 시점(2015. 12. 29.)부터"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20년 지특법 부칙 제10조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 제10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2015년 지특법은 법 제177조의2 단서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대상에서 법 제74조를 삭제하는 대신, 부칙 제5조에서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제2항 : 2020년 1월 1일'이라고 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2019. 12. 31.까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020. 1. 1.부터는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9

따라서 2020. 1. 1. 당시 2020년 지특법 개정 이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배○○